

504 조정: 학생 및 가족 안내서

1973년 재활법 섹션 504는 공립학교에서 자격을 갖춘 장애 학생에게 조정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은 특수 보건 필요가 있는 학생이 뉴욕시 교육청(DOE) 프로그램 및 활동에 장애가 없는 또래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안내서는 조정 자격 대상, 지원 방법, 조정 계획 개발 절차를 설명합니다.

DOE 프로그램 또는 활동이란 DOE에서 후원하는 것으로서, PA/PTA 주최 프로그램 및 활동이나, 교육청 건물에서 실시되는 특별활동 등을 말합니다.

섹션 504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청 [504 조정 웹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학교의 504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십시오.

어떤 학생이 504 조정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

1.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2. 이러한 장애로 인하여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에 중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1.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의 예로는 신체 장애, 건강 질환, 정신 질환 및 학습 장애 등이 있습니다.

단기 또는 간헐적 손상이란 무엇입니까?

- **단기 손상**(다리 부상 등)도 504 조정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정은 장애 기간 및 제한되는 정도에 따라 매우 상이합니다.
- **간헐적 손상**(천식 등) 역시 504 조정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이 발현될 때 주요 생활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준다면 학생들은 조정 대상이 됩니다.

2. 주요 생활 활동의 예

- | | | |
|------------|----------|------------|
| • 자기 돌봄 | • 음식물 섭취 | • 집중하기 |
| • 걷기 | • 수면 | • 사고 |
| • 보기 | • 서기 | • 커뮤니케이션 |
| • 듣기 | • 들어올리기 | • 학습 |
| • 말하기 | • 굽히기 | • 일 |
| • 호흡 | • 읽기 | • 손으로 작업하기 |
| • 주요 신체 기능 | | |

주요 생활 활동이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학생이 504 조정 자격을 갖기 위해 "학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상기 명시된 일상 활동에 상당한 제한을 주는 손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섹션 504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정확한 양식을 제출하면 각 학생의 케이스를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자력이 있는 학생에게는 섹션 504에 따라 어떤 조정이 제공되며 제가 어떻게 요청할 수 있습니까?

자녀에게 조정 수혜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모든 양식은 교육청 [보건 서비스](#) 또는 504 조정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504 코디네이터에게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4 조정 및 504 계획을 요청하려면, 자녀의 학교 504 코디네이터에게 **504 요청 양식**을 제출하십시오.

- HIPAA 승인(학생의 학부모가 작성)과 섹션 504 조정 학부모 양식 요청
- 의료 조정 요청 양식(학생 의료 케어 제공처에서 작성)

교육 및 기타 조정은 학교 건물이나 교실, 또는 시험 조정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청력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교사나 칠판에 가깝게 앉거나, 시험에 응시할 때 추가 휴식 시간이나 시험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조정의 예로 지원 기기, 특수 가구, 빌딩 조정, 엘리베이터 사용 등이 포함됩니다. 장애물이 없는 건물을 요청하려면 학부모는 교육청 학생 등록 담당실 또는 75학군 배정 디렉터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보조교사는 장애로 인해 교육청 프로그램 및 활동을 이용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배정됩니다. 예: 혼자 혈당수치를 체크할 수 없는 당뇨 학생 또는 신체적 또는 생리적 장애로 인해 화장실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

통학 교통편 조정에는 제한적인 이동 시간 또는 보조교사 지원(스쿨 버스에서 일대일 감독 제공)이 있으며 504 팀(대중 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제한을 받는 장기적인 의료 질환을 갖고 있는 학생 대상) 또는 교육청 학생 교통 담당실(임시 의료 상황 또는 단기나 장기 이동 제한을 받는 의료 질환이 있는 학생 대상)에서 검토합니다. 504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십시오.

보건 서비스는 학교에서 투약(예, 인슐린)이나 특수한 처치가 필요한 학생에게 제공됩니다. 보건 서비스를 요청하실 경우 학부모는 반드시 학생 건강 관리 제공처가 작성한 다음 양식을 교내 근무 학교 간호사/의료 전문가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약품 투여 양식(MAF) (약품 투여 대상) 및/또는
- 의료 처방 치료 양식(비약품)

만약 504 계획 또한 요구된다면, 학부모는 반드시 504 코디네이터에게 **504 요청 양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정을 요청한 후 어떻게 진행됩니까?

학부모가 작성하신 504 요청 양식을 504 코디네이터에게 그리고 보건 서비스를 위해 의료/의료 처치 양식을 학교 건물에서 근무하는 학교 간호사/의료 전문가에게 제출하신 후: 504 코디네이터는 귀하께서 처음 요청하신 날로부터 5일(수업일 기준) 내, 요청하신 서비스들에 따라 제출하신 504 요청 양식의 접수일로부터 15일 또는 30일 내에 이루어질 미팅 일정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부모님은 귀하의 요청 및 자녀에 대한 관련 정보를 논의하고 자녀의 조정 자격 여부 및, 자격이 있다면 어떤 조정이 가장 적합한지 결정하는 학교 504 팀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뇨: 임시 관리 미팅

가능하면 빨리 그리고 교육청이 당뇨 MAF를 접수한 후 수업일 기준 5일 내(학부모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때를 제외),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 행정직원, 504 코디네이터, 학부모, 학교 간호사 및 학교 보건 담당실 멤버(예, 보로 간호 디렉터, 간호 슈퍼바이저, 당뇨 팀 멤버, 건강 관리 제공처)들과 함께 미팅을 소집하여 저혈당 및 고혈당에 대한 직원 교육, 혈당 모니터링, 인슐린 투여 및 일과 중 음식과 물의 섭취와 같은 조정 등 당뇨 MAF가 완료되고 실행할 준비가 되었을 때와 최종 504 계획이 서명 및 실행되었을 때 사이의 해당 학생의 필요를 논의합니다.

504 조정 미팅(504 팀 미팅)에는 누가 참여하나요?

504 팀 미팅은 귀하와 자녀의 기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석합니다. 참석자들은 검토하는 정보를 이해하고 자녀의 필요를 충족할 조정의 종류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504 팀 미팅은 반드시 또한 다음의 각 범주의 사람 중 최소 한 명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자녀의 능력 및 스킬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자녀의 교사나 가이던스 카운슬러가 참석할 수 있습니다.)
- **리포트 또는 평가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 학교 사회 복지사 또는 간호사가 참석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조정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 504 코디네이터)

보건 서비스가 요청된 경우 학교 간호사 또는 학교 보건 담당실의 일원(보로 간호 디렉터, 간호 슈퍼바이저, 당뇨 팀 멤버, 보건 케어 제공자 등)이 반드시 504 팀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미팅에서 검토하는 정보는?

504 팀은 자녀의 시험, 관찰, 과제 샘플, 성적표, 의료 기록 등 다양한 자료의 정보를 검토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팀은 자녀의 능력, 성취, 행동, 보건 필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및 교직원들은 자녀의 능력 및 필요를 가장 잘 설명하는 정보를 무엇이든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녀의 주치의가 발급한 진단 및 제안 내용

자녀의 의사는 의료 조정 요청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의사는 학교에 특정 조정을 제공하도록 제안할 수 있습니다. 504 팀은 제안된 조정이 적절한지, 그렇다면 어떻게 학교에서 제공될 지 결정합니다.

자격 요건은 어떻게 결정되니까?

504팀은 자녀의 장애가 주요 생활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해당 팀은 이 미팅에서 검토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며 자녀의 수행 또는 학교 참여가 장애로 인하여 심각한 영향을 받는지 고려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는 개념을 안내한 용어 정리를 이 안내서 뒤쪽에서 참조하십시오.

제 아이는 504 계획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학생은 504 계획이 아니라 IEP를 통해 서비스를 받습니다. 관련 서비스 자격은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관련 서비스의 예에는 물리 치료, 언어 치료, 필수 카운슬링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이면 일반적으로 504팀이 학교

IEP 팀에 또는 학군 특수교육 위원회에 자녀를 의뢰할 것입니다.

제 아이가 보건 서비스를 받기 위해 504 계획이 필요한가요?

보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학생들이 504계획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보건 서비스가 학교 및 기타 교육청 프로그램 및 활동에 장애가 없는 또래와 동등하게 참여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504 계획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504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십시오.

- **예시 1:** 어떤 학생이 발가락을 부딪혀서 일과 시간 중 간호사 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런 학생은 기타 지원이나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학생은 기타 지원이나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이 학생은 504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 **예시 2:** 학교 일과 중에 당뇨가 있는 학생은 혈당을 모니터하고, 정해진 시간에 인슐린을 맞아야 하며, 화장실 이용시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당뇨 증상을 돌보기 위해 글루카곤 및 기타 스낵을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학생은 504 계획이 필요합니다.**

조정은 어떻게 개발되나요?

504 팀에서는 자녀의 개별 필요에 가장 적합한 조정 사항을 결정할 것입니다. 팀은 자녀의 질환 종류와 학생의 참여 능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고려합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동등한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조정을 선택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장애가 없는 또래와 최대한 교류할 수 있도록 **제한이 최소화된 환경**에서 필요한 조정을 받게 됩니다. 각 504팀은 학습 시간이 모자라거나 교우들과 떨어지는 것을 제한하는 목표가 포함되도록 각 학생의 504 계획을 개발합니다.

- **예:** 독립적으로 학교에서 건강 상태를 관리하지 못하는 당뇨 학생은 교실이나 학교 일과 중 학생이 머물게 되는 체육관이나 복도 등에서 혈당을 모니터할 보조교사를 배정받습니다.

각 학생의 조정을 위한 제한이 최소화된 환경을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요소의 예:

- 1) 학생의 건강 및 안전(예: 학생을 움직이지 않고 비상 투약을 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직원의 능력 등)
- 2) 학생의 필요 및 선호 사항
- 3) 학부모의 선호 사항
- 4) 수업 또는 학습 시간을 놓치는 것을 최소화
- 5) 장애가 없는 또래와 분리되는 시간을 최소화
- 6) 조정을 필요로 하는 학생의 다른 장애

학교 간호사 이용 등의 서비스는 각 학생의 제한이 최소화된 환경을 결정하는데 적절한 고려가 대상이 아닙니다. 보건 서비스가 제공될 장소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504 코디네이터, 학교 간호사 및 기타 504 팀 멤버들은 각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화된 평가를 실시할 것입니다.

일단 자녀가 자격이 된다고 판단된 후에는, 계속해서 조정 대상이 되나요?

학부모는 매년 MAF 및/또는 의료 처방 치료 양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504 요청 양식**은 또한 신규 또는 조정된 보건 서비스 또는 기타 조정을 요청할 때 필요하지만 기존 조정의 지속적인 적용에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04 계획은 각 학년도 종료 전 또는 필요하다면 좀더 자주 검토될 것이며 필요하다면 검토 시점에 수정될 것입니다.

자녀의 장애가 학교 참여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면, 자녀는 계속 조정 대상이 됩니다. 504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년도가 끝나기 전 만나 다음 학년도의 새로운 계획을 작성합니다.

자녀의 장애가 더이상 주요 생활 활동에 상당한 제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자녀에겐 더이상 조정 자격이 없습니다(504 계획 종료).

학부모는 어떤 종류의 연락을 받나요?

학교에서는 교육청 섹션 504 정책에 관한 내용을 학부모님께 알릴 것입니다. 모든 학교는 섹션 504 비차별 조항 공지를 매년, 그리고 요청이 있을 때 게시 및 공유하여야 합니다.

504팀에서 자녀가 504 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다음을 부모님께 보내드립니다:

- **수혜 자격 통지문(A Notice of Eligibility).** 결정된 수혜 자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녀 학교 담당 보로/뉴욕시(B/CO) 보건 디렉터와 상담하십시오. 연락 정보는 학교에서 알려드리거나 섹션 504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건 디렉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시려면 공정 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결정 수신 후 10일 이내에 서면 요청을 접수 하셔야 합니다.
- **504 계획.** 자녀에게 조정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504 코디네이터가 504 팀의 참여로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하여 504 계획을 완성합니다. 학부모의 서면 동의 없이 504 계획은 이행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504 계획이 완성되거나 그 직후 504 팀 미팅에서 동의를 받게 됩니다.
- **재승인에 관한 연례 통지** 이 안내문에 다음 학년도에 자녀의 504 조정을 갱신하려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차가 안내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교육감 규정 A-710](#) 및 섹션 504 조정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섹션 504 절차 중 랭귀지 액세스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나요?

요청하시면 교육청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구사하는 뉴욕시 주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9개 언어("지원 언어") 중 하나를 선호하신다면 504 미팅 통역과 504 계획 및 통지문 번역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의 504 코디네이터에게 랭귀지 액세스 서비스를 요청하십시오. 영어 및 지원 언어 이외의 언어를 선호하시는 분도 랭귀지 액세스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랭귀지 액세스 서비스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때에는 교육청 웹사이트(schools.nyc.gov/connect-with-us)에 설명된 문제제기 절차에 따르십시오. 귀하의 문제가 학교나 학군 차원에서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공식 불만 접수를하실 수 있습니다. 불만 접수 방법에 관한 상세 내용은 교육청 웹사이트(<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school-environment/get-help/parent-complaints-and-appeals>)를 참고하십시오.

그 밖에 질문이 있으십니까?

- 질문이 있으시거나 자녀의 교육청 또는 비교육청 특별활동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우려가 있으시면

자녀 학교 504 코디네이터 또는 [보건 디렉터](#)에게 문의하십시오. 교육청의 섹션 504 프로그램 매니저에게 504Questions@schools.nyc.gov로 이메일 하셔도 됩니다.

- 교육청 웹페이지에서 조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용어 정리

다음은 섹션 504 및 교육감 규정 A-710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장애 학생 조정과 관련된 개념의 요약입니다.

자격을 갖춘 학생: (1) 장애가 없었을 경우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교육 서비스를 제공 받을 연령의 학생,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뉴욕주에서 의무적으로 초등학교 및 중등 교육을 제공 받도록 규정한 연령의 장애 학생, 또는 (2) 장애학생 교육법(IDEA)에 따라 무료로 적절한 공립 교육(FAPE)을 받도록 뉴욕주에서 요청한 학생.

장애가 있는 개인: (A)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b) 최소 하나의 주요 생활 활동에 심각한 제한을 받는 사람. "장애"는 광의적 개념이며 상황에 따라 각 학생 별로 결정될 것입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이란 생리적 장애나 상태, 외형적 손상, 또는 다음의 신체 대사 기관 중 한 가지 이상에 영향을 끼치는 해부학적 손실: 신경학, 근골격계, 특수 감각 기관, 언어 관장 기관을 포함한 호흡기, 심혈관, 생식, 소화기, 비뇨생식기, 혈액, 림프, 피부, 그리고 내분비, 또는 정신적 또는 심리적 장애.

주요 생활 활동: 예:

- 스스로 돌보기, 손으로 작업하기, 걷기, 보기, 듣기, 말하기, 씻기, 배우기, 집중하기, 생각하기 및 일하기 및
- 주요 신체 기능(면역 체계, 정상적인 세포 성장, 그리고 소화, 장, 방광, 신경, 뇌, 호흡기, 순환기, 그리고 내분비 기능과 같은).

심각한 제한: 제한의 정도는 개인별로 결정되며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사용 이외에 완화 조치의 교정 효과(약품, 보철 장치, 지원 기기 등)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손상으로 인해 활동을 못하거나 심각하게 저해되는 경우에만 주요 생활 활동에 상당한 제한이 있다고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 또는 활동: 학부모 회(PA)/학부모 교사회(PTA) 후원 방과 후 프로그램 또는 교육청 건물에서 실시되는 특별 활동을 포함한 교육청 후원 프로그램 또는 활동.